

# 2015년 경찰간부후보생 채용 제2차시험 행정법 문제

응시분야 :

응시번호 :

성명 :

**【문 1】** 영하 17도의 추운 겨울날 새벽 1시경 우이동 산장에서 연말 송년회 후 귀가하던 L상사 직원 甲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A지구대 부근의 도로상에서 잠이 들었다. A지구대 경찰관 丙은 차량순찰 도중 잠이 든 甲을 보았으나, 날씨도 춥고 근무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순찰차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甲은 새벽 4시경 극심한 추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 (1) 격분한 甲의 배우자 乙은 국가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인용 가능한가? (25점)
- (2)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을 경우, 국가는 경찰관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25점)

## [참조조문]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문 2】** 허가의 법적 성질과 효과를 약술하시오. (25점)

**【문 3】** 제3자의 경찰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